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25 발의연월일: 2021. 2. 4.

발 의 자:임호선·김성주·노웅래

도종환 • 박광온 • 변재일

신정훈・윤준병・이규민

이수진 • 이장섭 • 이학영

전용기 · 정필모 · 최기상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철도는 다른 교통편에 비하여 안전성과 정시성, 단위 수송비용의 절 감,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의 철 도 노선은 도로 등에 비해 부설 지역이 적어 국토 전반적으로 철도교 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러한 물류 편의성의 차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 정주여건 악화, 산업발전 저해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하 락으로 이어지고 있음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건설을 계획할 때 효율성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철도를 건설하도록 하고, 「국가 균형발전 특별법」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 ·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"를 "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	제4조(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
립 및 변경) ① 국토교통부장	립 및 변경) ①
관은 국가의 <u>효율적인 철도망</u>	<u>균형발전과 효율적</u>
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	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
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(이하	
"철도망계획"이라 한다)을 수	
립·시행하여야 한다.	
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	2
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	
수립하여야 한다.	
<u><신 설></u>	1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
	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
	<u>년계획</u>
<u>1.</u> (생 략)	<u>1의2.</u> (현행 제1호와 같음)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